

#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1항”을 “법 제4조제1항 및 법제4조의2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법 제4조제3항”을 “법 제4조제3항 또는 법제4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법 제5조의2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5조의2제1항각호”로 한다.

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생년월일(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”을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10조의20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제4호까지”를 “제6호까지”로 한다.

5. 법 제2조제1호하목5)에 따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, 본인 및 「상법 시행령」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·교환의 중개·알선·대행을 하지 말 것
6. 법 제2조제1호하목5)에 따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

매매 · 교환 하지 말 것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<신 설>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

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, 본인 및 「상법 시행령」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·교환의 중개·알선·대행을 하지 말 것

6. 법 제2조제1호하목5)에 따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매·교환 하지 말 것

7. ----- 제6호까지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